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출발점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 정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해당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권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현재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수의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단체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정보 콘텐트 보호의 근원

정보 콘텐트 산업은 저작물의 재생산과 원활한 유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콘텐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저작물이고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독특한 보호를 받고 있다. 대부분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예로서 종이책을 매체로 한 어문저작물이 있는가 하면 음악이나 미술 또는 영상 저작물(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소프트웨어나 전자 게임, 전자 데이터베이스 등이 훌륭한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은 다른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저작권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허락하거나 소극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저작자 자신이 저작물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이하에서는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및 방송), 그리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총칭하여, 넓은 의미로 각기 저작물, 저작권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정보의 취득 방법

현행 저작권법에는 몇 가지 방법으로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저작재산권의 제한, 법정허락 등)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저작물의 대량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저작물의 존재와 저작자의 신원, 권리자의 소재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일컬어 '저작권 정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작용하는 저작권 정보란 개념적으로 저작물 정보와 저작자 정보, 그리고 권리 정보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물 정보란 저작물의 제목, 창작이나 공표 연도, 발행(최초 발행 및 동시 발행) 장소, 분량 등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고, 저작자 정보란 저작자의 성명, 생존 여부 및 사망한 경우 사망 연도, 국적 등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맛보기'로 저작자의 이력이나 저작물의 개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권리 정보란 저작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으며, 이에는 상속, 양도, 신탁, 그리고 질권 및 출판권 설정 등에 관한 정보 및 이용조건 정보가 주종을 이룰 것이다. 개별 권리마다 변동되는 권리의 범위, 기간, 권리의 제한 등이 다를 것이다. 이러한 권리 정보는 한정된 의미의 정보이다. 다시 말해서 집중관리단체나 개별 저작자의 권리관리정보를 포함하는 의

미는 아니다.

현재 저작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 제도와 집중관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등록 제도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으나 거의 유명무실하고, 집중관리 제도가 그나마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 정보는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에 의하여 의존하고 있다.

'저작물 정보'는 상당한 정도 획득이 가능하다. 도서관의 검색 시스템을 통한 방법이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해당 정보도 주로 텍스트 자료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도 주로 '문헌 정보'이기 때문에 저작권 정보로서는 충분하지도 않다. 텍스트 자료 이외에는 '저작물 정보' 자체가 매우 희귀하다. 음악이나 비디오, 영화 등은 전문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음악이나 영상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다. 다른 저작물(설계도, 지도, 캐릭터, 게임 등)은 아예 그러한 시설조차 없다. 아직 이 분야의 산업적 측면, 문화적 측면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진은 일부 전문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등록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의 역사가 짧은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나 시간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정보 취득 욕구에 비추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가. 등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다른 산업재산권과 같은 방식 또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권리의 이전을 위한 절차적인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해당 권리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기 어렵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저작권법상 무방식주의라는 기본 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일정한 공시의 효과를 주는 제도로 등록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단지 이용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저작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즉,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존재를 일반 공중에 공개하게 되면 이용자가 늘고, 이에 수반하여 자신의 명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도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등록 제도는 자신의 이름(이른바 무명 및 이명)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작물의 발행이나 공표 사실을 알지 못해 보호기간의 산정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제도 자체로서만 의미를 지닐 뿐, 공시 제도가 노리는 법적 효과는 전연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을 맞이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자원도, 법적 뒷받침도 없다.

등록을 통해 얻는 정보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대부분 담고 있다. (첨부 참조) 저작물 이용자는 각종 저작권 정보(저작자의 성명 · 국적, 저작물의 제목 · 장르 · 개요,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연락처, 이용 조건, 사용료 등)를 어디에선가 얻고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는지 파악한 연후에 권리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한다. 이 점에서 기존의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살아 숨쉬는 것으로 바꾼다면 이는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이기는 길이다.

나. 집중관리 제도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거나 원격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의 속성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마련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저작권의 본질인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바로 집중관리 제도이다.

집중관리 제도란 다수의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단체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스스로 구제를 위하여 소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3개 단체가 문화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어문저작물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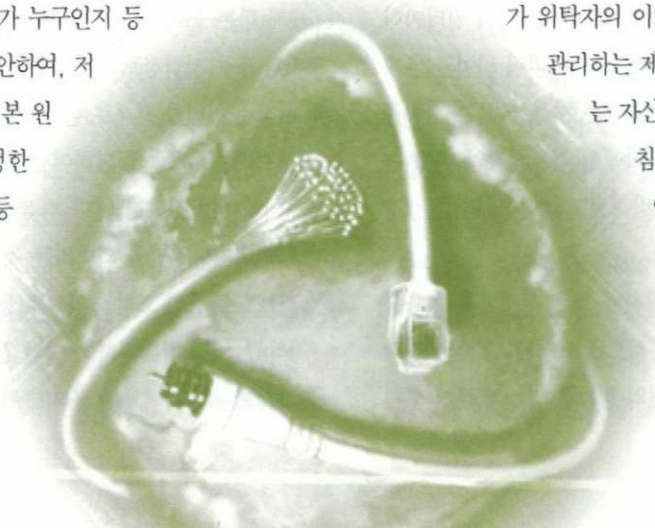

방송 대본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그리고 음악저작물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맡아 신탁관리하고 있다. 신탁관리는 아니지만,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로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와 한국영상음반협회가 있다. 이 두 단체는 판매용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수령을 위한 지정단체로서 다른 권리(복제권, 실연방송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집중관리단체는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고 해당 저작물 모두에 대한 권리 처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 저작물의 수는 약 23만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를 통해서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다시 말해서 직접 관리하는 저작물은 7만4천편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장 저작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단체의 실정도 이러할진대 다른 분야(방송작가협회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MP3 파일 서비스의 가장 큰 장애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을 행사할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저작물 이용자 대부분은 음악저작물의 예를 제외하고는 단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이 촉진되고 따라서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정보 내지 저작물이 새로운 형태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나 저작물의 등장을 재촉하고 있다. 기존의 인쇄 매체가 CD-ROM 등 디지털 매체에 수록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해 이용되는가 하면, 기존 정보가 가공되어 새로운 정보나 저작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제작 기술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멀티미디어 타이틀의 제작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시장성 있는 제품을 약속하지 못한다.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정보제공업 내지 콘텐트 산업은 다른 정보산업 분야에 비해서도 놀라우리만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 정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해당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권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현재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그 모든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는 일일이 저작권자를 찾아내어 협의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수반한다.

정보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멀티미디어 콘텐트의 주축을 이루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저작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창작물이 사장되는 한편 멀티미디어 콘텐트 산업 내지 문화산업의 성장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정보통신 기반구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정보사회의 궁극적인 목표에 진입하지 못하게 작용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고 멀티미디어 콘텐트 산업 및 정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첫째 저작권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콘텐트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지적 창작물은 그 특성상 '새로운' 독창적인 작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멀티미디어 콘텐트는 기존의 창작물이나 소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둘째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우리 식의 정보화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고속도로' 상에 양질의 우리 멀티미디어 콘텐트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콘텐트 제작에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콘텐트 제작을 위한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것이고, 이것은 곧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결된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외래의 수입품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셋째 다른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도서관 또는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저작권 정보의 확인과 저작권 처리를 전제로 한다. 전자도서관 구축 그 자체가 저작권 문제라는 '장애'로 인하여 부진하다면 이는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전자도서관은 단지 텍스트 자료의 디지털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리 정보와 영상물 정보도 훌륭한 도서관 자료로 등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족한 저작권 정보를 각종 저작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 9월 이후 한국전산

〈표〉 저작권 정보의 구성요소(어문저작물)

저작권 정보	등록 정보			비고
저작물 정보	저작물	제목	제명	본제, 부제 등
		창작 연도	-	
		분류	종류	
		원저작물 정보	-	번역, 각색 등의 경우
		수량 및 크기	수량	
		사용 언어	-	
	공표 정보	공표 매체	형태	발행 포함
		공표 연도	맨 처음 공표( )된 연월일	
		최초 공표 국가	맨 처음 발행된 국가명	* 동시 발행 포함
	맛보기	사진		자켓, 표지 등
		개요	저작물의 내용	초록, 요약
저작자 정보	저작자	성명	이름	본명, 예명 등
		생존 여부	-	예: 1950~
		국적	국적	
		초상	-	사진, 캐리커처 등
		소개	-	이력 등
권리 정보	저작권자	성명	등록권리자	
		연락처	주소	주소, 전화번호, URL 등
		지분	-	
		저작자와의 관계	등록의무자, 등록의 원인 본	인, 상속인, 양수인
		권리 취득일	등록의 원인(발생일)	
	권리 변동	출판권 설정자	등록의무자	* 출판권의 예
		출판권 출판권자	등록권리자	* 변경 등록
		출판권 대가 및 지급 방법	-	
		출판권 계약일	-	
		출판권 존속기간	-	
	위탁관리 업자	단체명	-	신탁관리, 대리 · 중개 등
		단체의 종류	-	
		권리의 종류	-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URL 등
	이용 조건	이용 방법	-	
		이용 조건	-	요율, 금액 등

원의 정보화지원사업과 정보화근로사업 자금의 도움을 얻어 "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올 10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URL은 http://db.copyright.or.kr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 분야별로 약 30만 건의 저작권 정보를 담고 있다. 어문저작물 약 15만건, 음악저작물 약 4만6천건, 사진저작물 약 7만8천건,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및 방송) 약 1만건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정보는 거의 대부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중심으로 구축한 것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의 양에 비추어본다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집중관리단체 관리 저작물이 한정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단체 관리 저작물임에도 실제로 해당 단체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 경우 회원 명부를 가지고 저작물 목록을 일일이 찾아내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용자의 요구가 빈번한 분야이면서도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일일이 저작자를 찾아 저작권 정보를 만들기도 하였다. 사진 저작물의 대부분은 그와 같이 구축되었다.

한편,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도 일부 시범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술과 건축, 영화와 연극 등 미개발 분야를 발굴하여 축적하는 것도 앞으로 남겨진 숙제이

다. 학술적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단행본이나 논문 정보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으로 손색이 없고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저작물들을 모두 포괄하여야만 명실상부한 '저작권 정보'로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은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남겨진 과제

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구축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구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금으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은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1960~70년대 고도성장을 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제개발 계획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아직 미숙한 국내 저작권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에 다름아니다.

일본도 국가 기관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이른바 '저작권권리정보집중기구'(J-CIS)의 설립을 오는 2000년까지 완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95년에는 이용자의 요구가 높은 미술.사진.컴퓨터그래픽 분야 약 3천여 저작물에 대하여 각 부문, 작품명과 개요(일부 화상 정보 포함), 저작자명, 저작재산권자명, 공표 매체, 사용료 등 권리 정보를 CD-ROM에 담은 모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아직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완성하지 못했다. 우리보다는 일찍 시작하였으나 그 진행은 더딘 편이다.

그렇다면 분야별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해야 하고 기존 단체의 관리 대상 저작물을 확대해야 하는 것, 그리고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기 부적절한 저작물은 저작자가 스스로 일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전자는 집중관리단체의 정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이것은 몇 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 유일한 방법은 저작권 등록을 활성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정보를 보충하는 것이다. 집중관리단체 관리 저작물도 상당수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분쟁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입증 편 의를 위하여 등록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와 저작권자에게 다가가는 등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이에 의하면, 첫째 저작자 등 권리자는 저작권법상 법적 의미를 지니는 사항을 행정 관청에 등록하고, 등록 사실에 대한 추정적 효과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및 창작 연월일과 최초 공표연월일 추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도 법적 효과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기존의 양도 등 권리 변동 등록 모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출판권 설정은 법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다(저작권법 제60조 3항 참조).

셋째 등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저작권 정보는 앞으로 다가올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전제로서, 저작권 분야만을 살펴보더라도, 권리관리정보의 구축이 필요한 바,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이들 정보의 각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권리관리정보는 1996년 WIPO 저작권조약과 실연 · 음반조약에서 반영된 개념으로 상당 부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저작권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WIPO 저작권조약 제12조 2항, 실연 · 음반조약 제19조 2항).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구축된다면 이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정이 조약에 반영되었다. 양 조약에서는 권리의 침해를 유인, 조장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고 1)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변경하거나, 2) 변경, 제거된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공중에 전달하는 사람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조약 제12조 1항 및 실연 · 음반조약 제19조 1항).

권리관리정보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유통과 권리 처리의 목적으로 생긴 것이다. 권리관리정보는 주로 디지털 환경에서 행해지는 거래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이를 위한 표준 코드(식별자)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준 코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를 다른 저작물과 식별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거래의 투명성, 회원 관리와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저작물 이용의 조건을 달 수도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표준 코드는 현재 개발 중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다. 일반적으로 코드에는 의미 코드(intelligent identifier)와 무의미 코드(dumb identifier)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담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후자는 단순히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식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후자는 정보의 변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업데이트 등을 위해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맺으면서

저작권 정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저작물의 이용 촉진을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전자상거래 또는 원스톱 쇼핑의 가능성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권리관리정보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하겠다.

오늘날의 우리 저작권 환경을 되돌아볼 때 이는 먼 곳의 일, 장래의 일로만 비춰진다. 현재 집중관리단체는 개별적인 허락과 포괄허락(blanket licensing) 방식을 혼용하여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포괄허락 방식은 저작권의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출한 것으로, 방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송사업자의 저작물 이용과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내부에서 행해지는 저작물 복제에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재래 환경조차 힘에 겨워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저작물의 대량 이용을 위해서 이러한 기존의 방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용자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저작자들은 자신의 권리 향유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NIMBY'를 외치는 또다른 존재로 비춰지기 쉽상이다. 저작권 정보의 구축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다.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권리관리정보의 구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하더라도, 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정부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집중관리단체, 권리자 단체 등의 역할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들의 순기능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감독 기능이라는 것이 규제 차원에서 생각할 일은 아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 대한 봉사와 책무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찬조회원 가입 안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미래 정보화사회의 꽃인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지원 · 육성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며 정보사회의 조기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3년 2월 4일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부흥을 이끌 대열에 함께할 업체(기관)를 찾습니다.

제출서류 및 회비

- **제출서류**
  - 입회신청서,대표자이력서 및 사진(명함판2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사본
- **회비**
  - 가입비 : 대기업 60만원(가입시 1회 납)
    중기업 30만원, 소기업 20만원
  - 연회비 : 대기업 70만원(분기별 분납가능)
    중기업 50만원, 소기업 30만원

※ 대기업 - 자본금 100억 이상, 중기업-자본금 3억 이상-100억 미만, 소기업-자본금 3억 미만

가입 문의 및 상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산업지원과
전화 : 318-5050(내선 131번)
팩스 : 318-5040

▶ URL http://www.dpc.or.kr
▶ 가입신청서 DOWN